



보도 일시	(지 면) 3. 7.(화) 조간 (인터넷) 3. 6.(월) 12:00	-
-------	---	---

담당 부서	벤처정책관 벤처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정주 (044-204-7700)
		담당자	사무관	공인식 (044-204-7705)

## 민간주도 벤처기업 확인제도, 제2기 벤처기업확인기관 모집

- 3년간(‘23.7.1~’26.6.30) 벤처기업 확인 업무를 수행할 벤처기업확인기관 모집
- 벤처기업 확인제도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비용 등 일부 예산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3월 7일(화)부터 3월 27일(월)까지 민간주도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운영할 제2기 벤처기업확인기관을 모집한다.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따라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 등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을 선별하여 지원하는 제도이다.

1998년 정부 주도로 시행되었으며, 2006년 공공기관 중심의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거쳐 2021년 2월부터는 혁신성과 성장성 중심의 ‘민간주도 벤처기업 확인제도’로 전면 개편되어 시행하고 있다.

벤처기업확인기관은 3년마다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있으며, 제1기 벤처기업 확인기관은 (사)벤처기업협회가 지정\*되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지정기간 : 2020년 7월 1일 ~ 2023년 6월 30일

제2기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의7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다음과 같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의7(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요건)**

- ①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일 것
  - ② 벤처기업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을 갖추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벤처기업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
  - ③ 상시근로자를 20명 이상 보유할 것. 단, 합산 경력\*이 10년 이상인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포함해야 함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의7의 제3호 가목 또는 나목 또는 다목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지정되면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행정사무와 벤처기업 확인위원회 심사지원사무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구 분	세부 내용
① 행정사무	1) 벤처기업 확인을 희망하는 기업의 신청·접수 2) 벤처기업 확인서 발급* * 확인업무 전산시스템 및 평가기관 관리·운영 포함 3) 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4) 벤처기업 정보 관리 및 통계 제공 5) 제도 상담 안내 대응
② 심사지원사무	1)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설치·운영 지원 2)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심의 안건 상정

또한, 정부에서 벤처기업 확인제도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비용,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평가·관리 및 심의 비용 등 일부 예산을 지원한다.

한편,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오는 3월 27일(월) 18시까지 중소벤처기업부에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 후, 자격요건 검토 및 선정위원회 평가 절차를 거쳐 4월 7일(금) 제2기 벤처기업확인기관을 지정 공고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에 사업공고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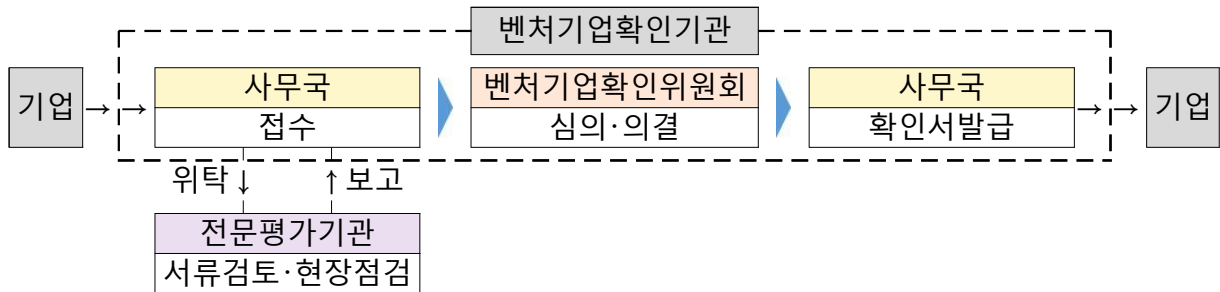
## 참고1

#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요

### □ 벤처기업 확인제도 정의

- 「벤처기업법」 제2조의2에 규정된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발굴·지원해 주는 제도
- 1998년 시행 이후 지속적인 법 개정을 거쳐, 2021년 2월 12일 혁신성·성장성 중심의 '민간주도 벤처기업확인제도'로 전면 개편되어 시행중

#### < 벤처기업 확인 프로세스 >



### □ 유형별 요건 : 유형별 해당하는 확인요건 모두 충족 필요

유형	확인요건
벤처투자	①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액 합계 5천만원 이상 ②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문화콘텐츠 7%)
연구개발	①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 ②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 5천만원 이상 ③ 직전 4개 분기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5~10% 이상 * 창업 3년미만 기업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적용 제외 ④ 사업의 성장성 평가 우수
혁신성장	① 기술의 혁신성 평가 우수 ② 사업의 성장성 평가 우수

※ 공통요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참고2

## 벤처기업확인기관 개요

- (법적근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3
- (역할) 벤처확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벤처기업 확인제도 운영기관
  - 신청접수 등 행정 사무\*와 벤처확인위원회 심사지원 사무\*\*를 수행
    - \* 신청접수, 확인서 발급, 벤처기업 정보 관리 및 통계 제공, 제도 상담 안내 대응 등
    - \*\* 벤처확인위원회 심의 안건 상정, 위원회 개최 지원
- (요건) '민간 주도' 취지에 부합하는 비영리 민간 기관으로서 전문 인력과 전담조직을 보유할 것

### 《 구체적인 요건 (시행령 제18조의7) 》

#### ① 민간기관 : 민법\*에 따른 비영리 법인일 것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② 전담조직 :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갖추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벤처기업 지원 업무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 ③ 전문인력 : 상시 고용인력을 20명 이상 보유하고, 그 중 전문인력\* 5명 이상 보유할 것

\* 창투사 등에서 심사업무, 벤처·창업 기업의 발굴·육성·보육 등을 주업무로 하는 기업·기관·단체에서 기업 지원업무 등에 합산 10년 이상 경력 보유자

- (지정 방법) 벤처확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법 제25조의3 제1·2항)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3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 확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 인력 및 전담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